

간호법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안 제27조).
-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Ⅱ. 검토 의견

1. 심사 경과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3건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여 2022. 5. 17. 대안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3. 1. 16. 법제사법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가 미완료되어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 2. 9. 해당 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2023. 4. 27.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후 2023. 5. 16. 동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3. 5. 30. 본회의에서 재의 결과 부결되었음.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제21대 본회의 의결안과 취지가 같은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4. 8. 27.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대안을 제안하였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대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등 제21대 본회의 의결안의 내용에 더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 및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 제안 대안의 주요내용

구분		개정내용	개정취지
제21대 국회 본회의 의결안 포함 사항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제11조 ~ 제13조)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및 간호보조업무의 내용을 규정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및 간호보조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제29조)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책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확보 등을 도모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제32조)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등에게 필요한 지식 전수 등을 위하여 교육 전담 간호사를 두어야 함을 규정	신규간호사등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적응력 배양 등을 도모
제22대 국회 추가 사항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를 변경(제1조)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영역을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간호사등의 종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일부 직역단체의 우려를 완화
	타법과의 관계 규정(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법 규정이 없는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적용시 혼란을 방지
	간호사의 업무범위 (PA간호사 제도화, 제12조 및 제14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PA간호업무의 불법 논란을 해소

구분		개정내용	개정취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규정 삭제(제27조 삭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에 규율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제40조)	간호사등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간호사등의 신고의무 이행확보의 실효성을 제고
	청문(제41조)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경우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시정명령 (제42조)	의료기관이 간호법 제14조 및 제32조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위반을 사전에 방지
	벌칙 (제46조 및 제47조)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 대여를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및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	면허 대여 관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

2.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영역 구체화(안 제1조)

안 제1조에서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영역을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규정한 것은 제21대 국회 의결안에서 ‘지역사회’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당초 제기되었던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은 ‘지역사회’를 구체화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을 허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3. 진료지원업무 근거 신설(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은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수술 집도를 보조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의 불법성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간호사의 업무관계의 협력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반면, 이에 대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4.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위임규정 관련(안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진료의 보조, 진료지원업무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그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4조제2항에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② <u>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② <u>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u> ,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박 동 찬)